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인사위원회 규정

수원시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2022. 02. 16.
개정 2023. 04. 19.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본회 사무국 규정 제25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회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서 행정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 사무국 규정 제33조에 의한 직원에 적용된다.

제4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2분의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9.〉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3. 4. 19.〉

③ 부위원장은 본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되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 조교수 이상 1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무국에서 추천한다.

⑤ 본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본회 직원 중 경영지원과장이 하되, 특별한 경우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담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 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5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운영) ①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사무국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건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및 법률자문을 한 경우

② 전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전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7조의2(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진술권 부여) 본 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케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인의 심문할 수 있다.

제9조(심의) ① 본 위원회의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의 심의안에 대해서는 간사가 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위원회에 재심의케 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회의의 비공개와 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내용이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석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 및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2. 02. 1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04. 1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　　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요(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요(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요(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요(　)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요(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요(　)
7	위원회의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요(　)

※ "예"라고 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 약 서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호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원회 지침

직위 : 인사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화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 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